

의안번호	제 14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1월 11일

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4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11월 11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-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가.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전입금	보조금	차입금	용자금 회수 (이자포함)	예탁금 원금회수	예치금 회수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
합계	1,116,524	19,787	0	203,870	50,773	32,532	736,713	41,591	27,907	3,351
양성평등기금	302	0	0	0	0	50	109	0	143	0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91,963	0	0	0	0	0	245,147	41,591	5,225	0
남북교류협력기금	1,212	0	0	0	0	0	1,141	0	71	0
자활기금	324	0	0	0	1	0	283	0	39	1
사회복지기금	27,417	6,596	0	0	0	0	20,348	0	473	0
식품진흥기금	1,123	0	0	0	88	0	625	0	223	187
투자진흥기금	18,232	0	0	0	0	0	18,179	0	42	11
중소기업육성기금	82,923	0	0	0	46,134	0	35,968	0	821	0
체육진흥기금	88	0	0	0	0	0	31	0	57	0
재난관리기금	38,064	13,191	0	0	0	0	24,511	0	362	0
환경보전기금	12,774	0	0	0	0	0	9,024	0	605	3,145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6,332	0	0	0	0	0	6,327	0	0	5
청소년육성기금	52	0	0	0	0	0	21	0	29	2
지역개발기금	635,718	0	0	203,870	4,550	32,482	374,999	0	19,817	0

나. 지출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비용자성 사업비	용자성 사업비	인력 운영비	기본 경비	예탁금	예치금	차입금 원리금 상환	예수금 원리금 상환	기타 지출
합계	1,116,524	20,234	60,300	0	0	37,391	846,791	89,373	62,425	10
양성평등기금	302	140	0	0	0	0	162	0	0	0
통합재정안정화기금	291,963	0	0	0	0	0	229,538	0	62,425	0
남북교류협력기금	1,212	1,000	0	0	0	0	212	0	0	0
자활기금	324	53	0	0	0	0	271	0	0	0
사회복지기금	27,417	1,210	0	0	0	0	26,207	0	0	0
식품진흥기금	1,123	668	300	0	0	0	145	0	0	10
투자진흥기금	18,232	0	0	0	0	18,232	0	0	0	0
중소기업육성기금	82,923	5,680	50,000	0	0	5,000	22,243	0	0	0
체육진흥기금	88	0	0	0	0	0	88	0	0	0
재난관리기금	38,064	6,917	0	0	0	0	31,147	0	0	0
환경보전기금	12,774	4,359	0	0	0	8,000	415	0	0	0
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	6,332	173	0	0	0	6,159	0	0	0	0
청소년육성기금	52	32	0	0	0	0	20	0	0	0
지역개발기금	635,718	2	10,000	0	0	0	536,343	89,373	0	0

3. 의안전문 : 첨부 (2023년 기금운용계획안)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)**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